

**Q.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지침 내용에는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 중 '점검구 1㎡ 이하, 갑종방화문, 4곳 이상 볼트 조임'의 3가지 조건에 전부 해당 되어야만 소방시설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 관련부처(구. 소방방재청)의 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1. 4. 20 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간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 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간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등 적의조치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2011년 4월 21일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피트공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검구 요건은

- 1)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에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 2) 1㎡ 이하 크기로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상기 2가지 조건으로 해석됩니다.(단, 세부적인 시공방법 및 갑종방화문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련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중, 외벽을 60mm 베이스판넬로 시공하였을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베이스판넬로 외벽 시공시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으로 인정하게 되는지 아니면 비내력벽으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베이스판넬로 외벽을 시공하고 드라이비트를 부착할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A. 내화구조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인정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베이스판넬, 드라이비트 등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내화구조가 아니므로 내화구조인정을 받으셔야 하며, 내화구조 인정은 해당 구조의 제조자나 시공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내화구조인정을 신청한 후 품질검사 및 해당 구조에 대한 시험(내화시험+부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내화구조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의 제품을 조합하신 경우 내화구조 인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인정서를 취득한 구조만 내화구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Q. 지하2층 지상22층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하여 지상층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지하층은 없습니다. 지하층에는 엘리베이터 승강기실, 제어함룸, 통신실, 전기실, 피트 등이 있고, 나머지 공간은 도면상에 실명**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없고 문이 없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연행률 등 모든 공간에 스프링클러가 제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에서 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 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6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 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물분무소화설비(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1)

- |              |               |
|--------------|---------------|
| 1) 물 분무 소화설비 |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2) 미분무소화설비   |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 3) 포소화설비     | 7) 분말소화설비     |
|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8) 강화액소화설비    |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에서 아래와 같이 헤드설치면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단, 상기 전기실 등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기실, 통신기기실 및 전산실은 바닥면적 300㎡은 대상임)인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중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장소 중 제연행률과 용도가 설정되지 않은 구획되지 않은 실의 경우에는 헤드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명확한 설치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할 소방관서에 도면 등을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하나의 방화셔터에 2개의 비상문내장형(일체형도어) 또는 그 이상의 비상문을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A.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제3항에서는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방화셔터에 2개 이상의 비상문(일체형 출입문)을 설치하여 시험을 통과한 성적서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1개로 인정을 받은 일체형방화셔터에 추가로 출입문을 설치하시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